

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사무국장 채용 공고(연장)

국가 R&D 정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금속소재 분야 기술발전의 중심 기관인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무국장을 모시고자 합니다.
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가. 채용 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주요 직무	인원
사무국장	사무국 업무 총괄관리 (상근직) 금속재료 R&D사업 수행 및 총괄	1명

나. 응시자격

-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'국가기술자격법'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이거나,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, 전문지식, 관리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
- 해당분야 연구수행 경험 또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연구조합 정관 제 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(남자의 경우) 병역필 또는 면제자

다. 핵심 요구역량

-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
- 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
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
- 금속재료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대외 네트워킹 역량이 풍부한 자
- R&D 국책 과제 책임자 경력 및 해당분야 연구수행 경험과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자

라. 주요직무

- 사무국 운영 총괄 관리
- 산업기술R&D 사업기획 및 과제기획
 - 기술수준, 기술개발 동향 및 산업현황 분석, 해당 기술 필요성 검토
 - 경제성분석, 특허분석, 기술수요분석, 연구역량분석, 기획보고서 작성
- 산업기술R&D사업 사업화 기반 구축 및 실수요연계전략 도출
- 국내외 산업·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연구지원
- 철강금속산업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및 정부정책 대응

2. 전형방법

전형방법	일 정	합격자 발표	비 고
원서접수	'24.01.02(화) ~ 01.15(월)		
서류전형	~ '24.01.17(수)	'24.01.18(목)	합격자 : 3배수 이내
면접전형	'24.01.22(월) ~ 01.26(금) 중 1일	'24.01.29(월)	합격자 : 1배수 이내

* **임용예정일 : 2024. 3. 1.(금)**

* 전형일정, 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
* 서류전형은 제출한 응시원서에 대해 정성심사로 진행

* 면접전형은 개별면접으로 진행

3. 제출서류

구 분	주 요 내 용	
원서접수시	• 응시원서 (이메일접수,(연구조합 홈페이지(www.komera.or.kr) 참조)	
최종합격시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남자에 한함, 병역사항 표시) 각 1부 • 학위증명서 (학사.석사.박사) 각 1부 •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구청,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) • 신체검사서 1부
	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자격증명서 원본 각 1부 •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*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

4. 접수 및 문의처

- ① 접수기간 : 2024. 01. 02(화) ~ 2024. 01. 15(월) 15시 까지
 - * 마감시간은 이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
 - * 반드시 응시원서 파일을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함.
- ②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 (응시원서 파일을 cjh1106@komera.or.kr 로 제출)
- ③ 문의사항 :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최종희(Tel. 02- 555- 6643)

5. 기타사항

- ① 근무지역 :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(서울) *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
- ② 임기 : 2년
- ③ 신분 및 보수 : 사무국장(상근임원), 보수는 내규에 따름
- ④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
- ⑥ 신체검사서 확인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⑦ 임용일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동할 수 없음

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

【 결격사유관련 】

□ 연구조합 정관 제 14조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1항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